

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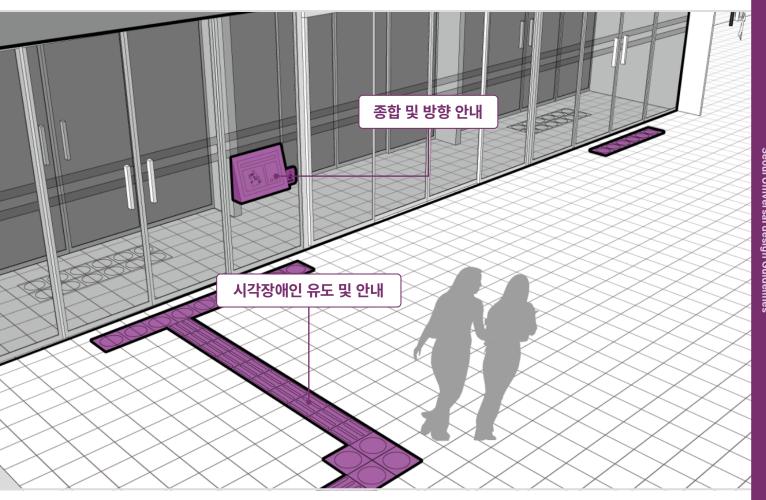
(1)	안내시설	279
(2)	기타 이용시설	284
(3)	기타 이용 설비	29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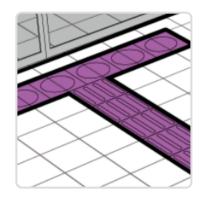
계획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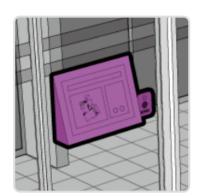
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의 주요기능, 주 이용시설 및 동선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, 시설특성별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.

(1) 안내시설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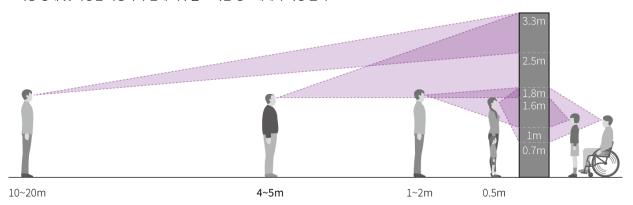
279 (1) 안내시설

종합 및 방항 안내

시설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안내시설을 설치한다. 이때 각 층별 주요 편의시설(수직 이동, 위생시설, 안내시설, 육아편의공간 등)과 주요실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하며,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색상, 글자체, 그림, 점자표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

- 안내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입구와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에 설치한다.
- 종합안내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 단,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.
-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.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.
-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,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. (글자의 크기 1.5cm 이상 및 색 대비 고려)
- 외국인,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. (구분하기 쉬운 색채 대비 활용)
-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정보 등을 표기하고,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.
-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/촉지도/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며, 안내시설까지 보행 유도를 위한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.
- 읽기 좋은 글자체(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서체)를 적용한다.
- 이 외 기준의 경우 KS규격 및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.

이용 형태 및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높이



이용 형태 및 다양한 이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너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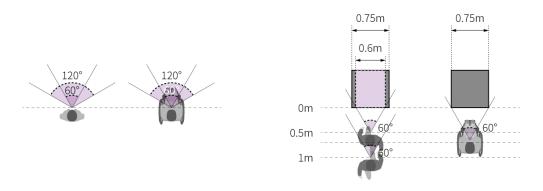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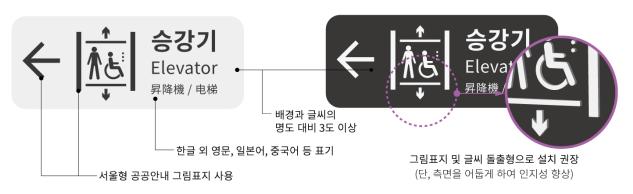


그림 및 외국어 병행 표기



가독성 높은 글꼴 사용

명조체 < 고딕체 san serif

□ㅂㅍ→□냅ㅍ ㅊㅎ→ㅊㅎ □ㅂㅍ→□ㅂㅍ ㅊㅎ→ㅊㅎ 붓븟→붓븟 터티→터티 CGO→ **CG**O

붓믓→붓믓 터티→터티 CGO → CGO 빼쁘→빼쁘 높퐁→높퐁 S38→S38 1II→1II

※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유니버설디자인 서체 '온고딕체'

281 (1) 안내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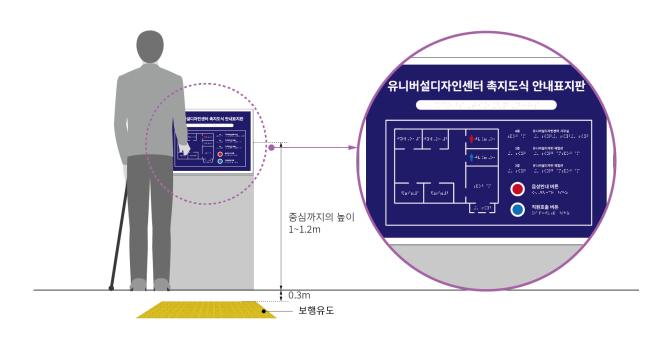
B 6

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

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 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법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, 규모가 큰 공간인 경우 실내외 음성 유도 시설 등 별도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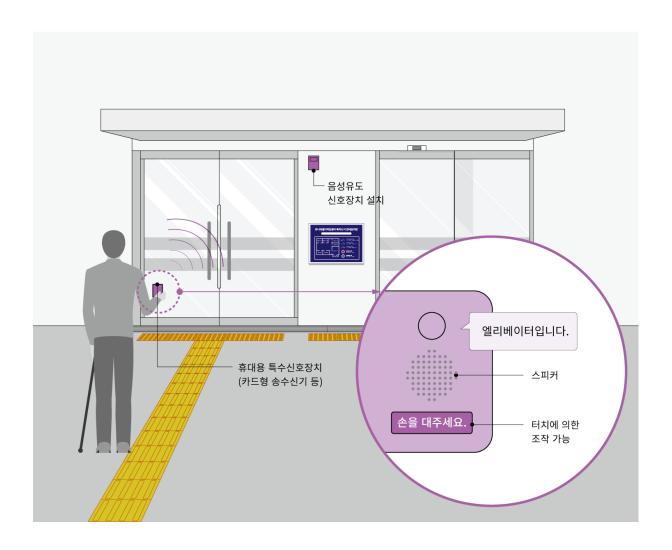
점자, 촉지도식 안내

- 점자, 촉지도식 안내판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.
 -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,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
 - 안내판 중심은 바닥에서 1~1.2m 범위에 위치 (단, 수직 형태로 설치 혹은 내용이 많은 경우 바닥에서 1~1.5m에 설치 가능)
 -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,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곳, 비나 눈,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차양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며 가급적 음성안내장치와 연계 설치
 -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 추가적으로 병설
 -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
 - 시설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, 승강기, 위생시설, 실명 등은 반드시 표기
 - 내마모성 재질, 위생적인 재질로 하며,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
 - 전면 0.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



음성 유도 및 안내

- 음성 유도 및 안내시설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.
 - 대지 경계선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
 - 주출입구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(필요에 따라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 인근에 추가 설치)
 - 상시 개폐되는 문에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, 바닥에서 2.1~2.5m 높이에 설치
 - 시설 규모 및 특성 따라 리모컨 수신 거리를 조정하되, 가급적 10m 내외로 조정
 - 소리크기 실내 40dB, 실외 60dB로 10m 이내에서 잘 들리도록 설치
 - 음성 유도 및 안내의 멘트와 문구는 명확하고 간결히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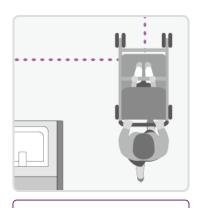


283 (1) 안내시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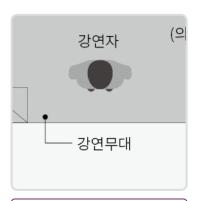
접수대, 안내데스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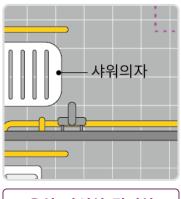
육아편의공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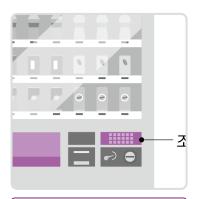
안내견 배려시설



관람석, 무대



욕실, 샤워실, 탈의실



무인 매표소, 판매기, 음료대 등



장애인, 노인 친화용 객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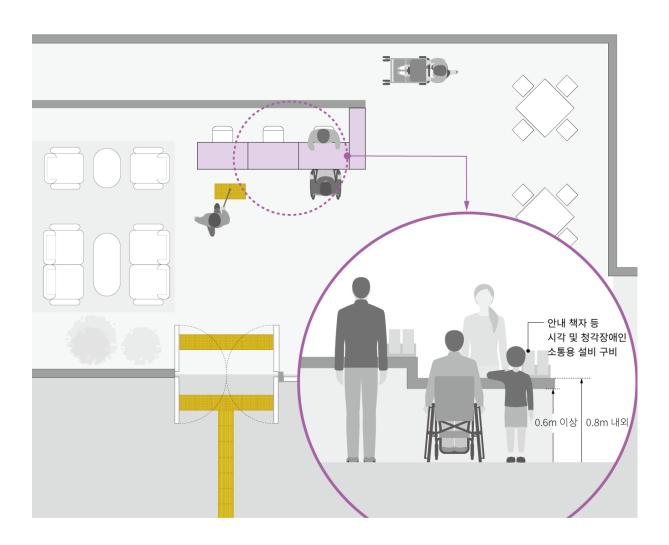


외부 활동공간

접수대, 안내데스크

접수대/안내데스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,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다.

-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.
- 휠체어 사용자, 어린이 등 사용자별 높이를 고려해 설치하고,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고려한다.
- 문서 작성용 선반의 설치 높이는 0.8m 내외로 한다.
-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한다.
-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/음성 유도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.
- 우산, 지팡이 걸이대, 가방이나 짐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.
-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도구와 다국어 안내 체계를 구비한다.



육아편의공간

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편의공간을 설치하며,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설치한다.

설치 위치 및 접근

-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육아편의공간(수유실)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.
- 육아편의공간(수유실)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아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.5m 이상을 확보한다.
-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.
-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.
- 휠체어나 유아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.
-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아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 있게 확보한다.

내부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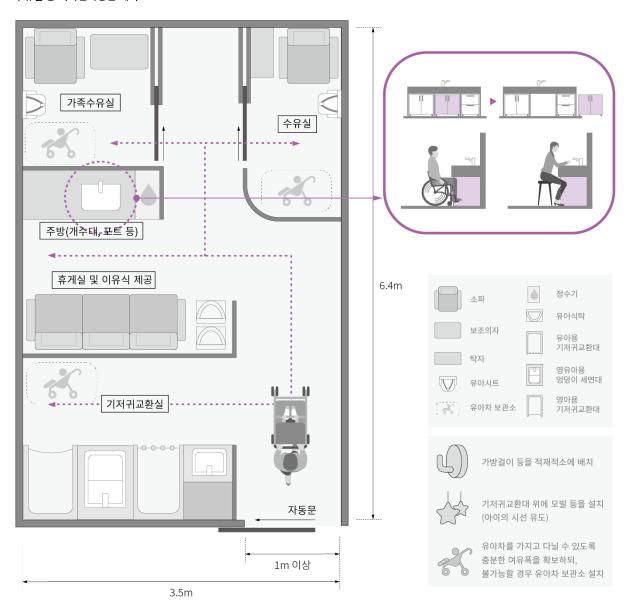
-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, 기저귀 교환대,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.
-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, 모유 수유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.
- 세면대,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.
- 시설 내부에 유아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확보가 어렵다면, 출입문 주변에 유아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.

편의 설비

-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, 전기 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,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,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, 개수대, 기저귀 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.
-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,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.
-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유아시트 등을 설치한다.
-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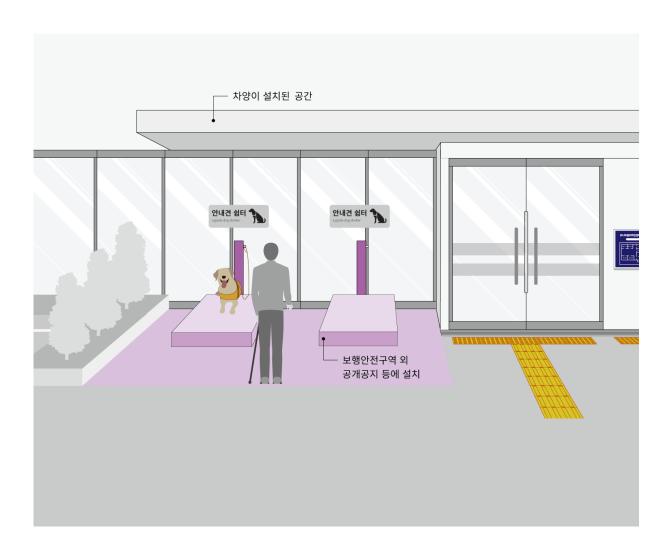
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예시



안내견 배려시설

건물 내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한다.

- 안내견 친화 시설 운영 정책을 수립한다.
- 관람석 등에는 통로 측의 고정된 좌석 중, 1개소 이상의 좌석은 안내견을 위한 좌석 공간 설치한다.
-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내 동반이 어려운 경우 건물 내외부 등에 안내견 대기장소를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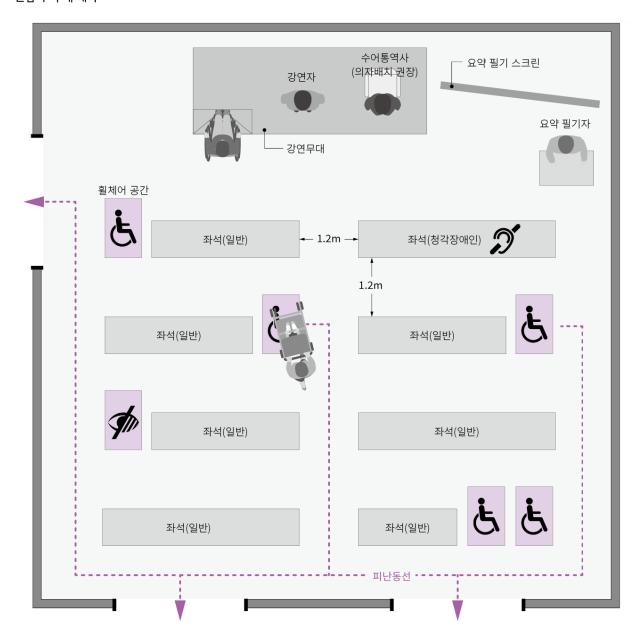


관람석, 무대

무대 및 관람석 설치 시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자립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, 동반자와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
- 관람석에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 청각 보조 시설을 설치한다.
- 장애인 관련 기준에 적합한 좌석을 확보한다.
- 좌석은 피난 통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.
- 동반자와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좌석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.

관람석·무대 예시



B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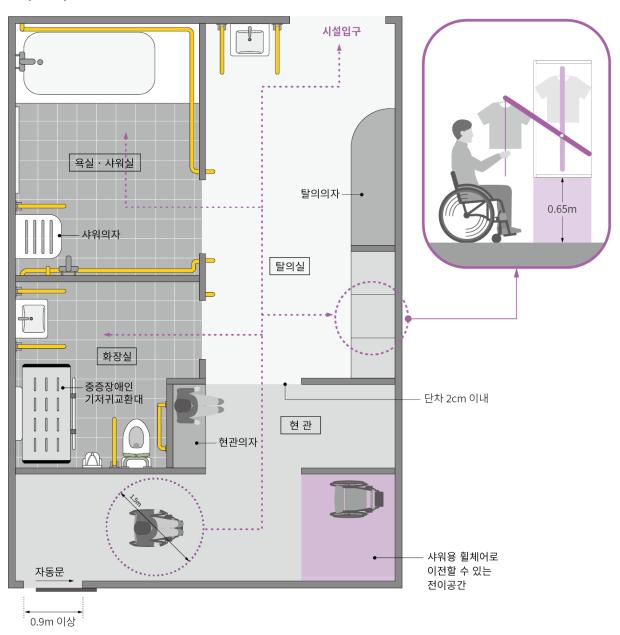
욕실, 샤워실, 탈의실

복지시설,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욕실, 샤워실, 탈의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
-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, 이동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설비를 설치한다. (출입문 유효폭 0.9m 이상, 수전에 점자 표시, 보조 의자 및 보조 손잡이 설치, 적절한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등)
- 내부 단차나 턱은 제거하며(바닥 기울기 1/10 이하),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. (C.S.R 0.4 이상 확보)
- 바닥은 상시 건조 상태 유지를 위해 바닥 난방 적용을 고려한다.
- 복지시설은 보조/간병인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. (샤워실, 욕조 전면의 활동공간 1.8m 이상 확보)
- 안전/보조 손잡이는 습윤 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및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욕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고, 바닥에서도 이용 가능한 비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.
- 탈의 락커는 하부공간 확보, 잡기 쉬운 손잡이, 조작이 쉬운 잠금장치 등 휠체어 사용자 및 손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.

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 2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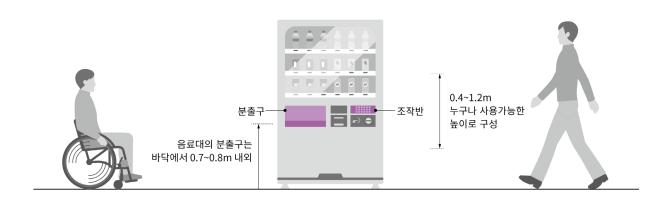
욕실, 샤워실, 탈의실 예시



무인 매표소, 판매기, 음료대 등

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판매기 등을 설치한다.

-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, 어린이 등을 배려한 높낮이가 다른 기기를 설치한다.
- 각 시설별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.
-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거나 점자블록 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.
- 외국인을 배려한 그림 표지 및 다국어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시·청각 장애인 등의 소통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쉽게 이용 및 인지 가능한 소통용 설비(관리자 통화 등)를 설치한다.
- 야외 설치 시에는 전면 대기공간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.
- 판매대, 매표대는 높이 0.7m~0.9m 내외, 바닥에서 0.65m 이상, 깊이 0.45m 이상의 하부공간을 확보한다.
- 판매기 등은 동전 투입구, 조작 버튼, 상품 출구 높이를 0.4~1.2m 이하로 한다.
- 음료대는 분출구가 바닥에서 0.7~0.8m 내외가 되도록 한다.
- 이용 및 조작 설비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과 조작 장치로 설치한다.
- 디지털 디스플레이, 터치형 무인 키오스크 등은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.



장애인, 노인 친화용 객실

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객실을 설치한다.

- 전체 객실 수 대비 2% 이상의 객실 수를 확보하고, 전체 등급에 고르게 객실이 분포되도록 한다.
- 일반 객실보다 높은 조도 확보 및 욕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.
- 객실 내 수납장 등 조작 용이한 가구/시설로 설치한다.
- 객실 안내시설은 큰 글자로 설치하고, 전화기/조작기 버튼 역시 쉽게 인지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.
- 응급 호출 시설(당기는 줄 형태/버튼형) 설치 및 시각 경보(경광등 등) 장치를 설치한다.
- 시·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여 초인 등, 진동 벨 등 다감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.
- 이동 보조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.

장애인, 노인 친화용 객실 예시



외부 활동공간

구역 내 어린이 놀이공간 및 운동공간, 교류 및 휴게공간 등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,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
- 각 공간 및 시설로 접근 가능하게 설치한다.
- 각 공간 및 시설 설치 시 보행자 등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.
- 주요 위험지역(교통시설, 잠재적 위험지역 등)과 이격 혹은 난간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.
- 어린이 주 이용시설인 경우 공인된 기관의 관련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/시설로 사용한다.
- 각 공간 및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 및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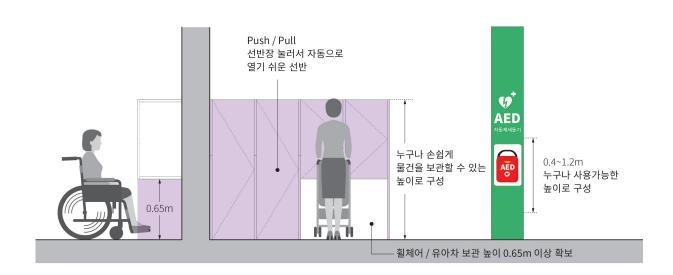
(3) 기타 이용 설비



기타 이용 설비

시설 용도별 의무 비치용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3을 참고하여 설치한다.

- AED, 구급함 등 비치하거나 혹은 응급 시설을 설치한다.
- 무거운 짐, 유아차 사용자를 위한 락커를 설치한다.
-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전동 휠체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.
-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기자재를 구비한다.
 - 점자 업무 안내 책자, 8배율 이상의 확대경, 보청 기기, 휠체어, 음성 계산기, 저시력용 독서기, 통신 중계 서비스 등 수화 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



295 (3) 기타 이용 설비